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신규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및 관리업무에 적용하고,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①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u>서류(원산지인증 신청품목이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u></p>	<p>제3조(적용범위) ----- ----- ----- ----- <u>고시」(이하 “특례고시”라 한다)에서 -.</u></p> <p>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① (현행과 같음)</p> <p>1. ----- ----- ----- ----- <u>서류. 이 경우,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어 신설</li>             <li>•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안(23.5.1.시행예정)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li> </ul>

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2에 따른 원  
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대신해서 규칙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  
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  
출할 수 있음)

<신 설>

<신 설>

우로 한정한다) 또는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가 제  
출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  
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이하, “원산지소명서 입  
증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  
일한 물품이거나, 최종물품의 생산  
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  
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  
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  
라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  
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나. 특례고시 별표 2의2에 따른 원산지

<신 설>

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소명한 경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현황자료

<신 설>

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규칙 별지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호가목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자료(다만,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3. ~ 6. (생략)

② (생략)

1.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2. (생략)

③ (생략)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2.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조문 간소화

• 약어 사용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별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제20조(재검토기한) -----  
-----  
--- 7월 -----  
-----  
-----  
-----.

부칙 <제2023-00호, 2023.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 이후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 관세청 직제 개정에 따른

## 관할세관 조정 반영

[별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관할세관	관 할 구 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안산세관, 수원세관, 김포공항세관, 부평지원센터의 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파주세관, 청주세관, 성남세관, 천안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대전세관, 구로지원센터, 도라산지원센터, 의정부지원센터, 충주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 원주지원센터, 대산지원센터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양산세관,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마산세관, 창원세관, 경남서부세관, 경남남부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진해지원센터, 사천지원센터, 통영지원센터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온산지원센터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군산세관, 목포세관, 광양세관, 여수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 완도지원센터, 익산지원센터, 보령지원센터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 1]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관할세관	관 할 구 역
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공항세관의 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파주세관, 청주세관, 성남세관, 천안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대전세관, 구로지원센터, 도라산지원센터, 의정부지원센터, 충주지원센터, 고성지원센터, 원주지원센터, 대산지원센터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양산세관,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마산세관, 창원세관, 경남서부세관, 경남남부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진해지원센터, 사천지원센터, 통영지원센터의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안산세관, 수원세관, 부평지원센터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온산지원센터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군산세관, 목포세관, 광양세관, 여수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 완도지원센터, 익산지원센터, 보령지원센터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